

Overview on Firm's Sustainability Report and Third-party Assurance: An analysis of Corporate Cases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검증 공시 현황: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Seung Jae Lee(First Auth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
(seungjaes@korea.ac.kr)

Jae Yeon Sim(Corresponding Auth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
(drsim@korea.ac.kr)

.....

In alignment with the global trend towards mandatory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Korean government mandates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all listed companies by 2030. This regulatory shift requires enhanced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from firms in disclosing their ESG activities. He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nsights by analyzing domestic companies' sustainability reports and third-party assurance between 2016 and 2022. Recent findings highlight incomplete ESG reporting: selective Scope3 emissions reporting, omitting legal sanctions, and using discretionary criteria for ESG data disclosure. Employing Python program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llects and analyzes sustainability reports of listed companies. Through detailed ca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obligations.

Key Words: ESG reporting, Sustainability report, Third-party assurance

.....

1. 서론

지속가능한 경영은 현대기업들이 직면한 주요한 과제로, 기업의 단기적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부터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hoi et

al, 2017). 기업의 지속가능한경영 및 사회책임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성과가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ESG 활동에서 환경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폐기물 배출 감소, 친환경 제품 생산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미하며, 사회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동자의 인권 보장 등을 포함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윤리경영, 주주권

Submission Date: 09. 16. 2023

Revised Date: (1st: 01. 17. 2024)

Accepted Date: 01. 24. 2024

Copyright 2024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보호 및 경영진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Park & Han, 2021; Yoon et al, 2018). ESG 활동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Kang & Jung, 2020). 이처럼 기업의 ESG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재무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의 수단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앞두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에 따라 ESG 활동 및 공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제3자 인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증기관 적격성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제3자 검증의 중요성 및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 인증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한 분석과 기업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당국 입장에서 향후 기업들의 ESG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전달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문제점을 담은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및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ESG 위상의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는 실질적인 ESG 경영방향을 담도록 보고서에 담도록 [K-ESG 가이드라인] 수립 및 ESG 공시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기업의 ESG활동에 대한 정보의 기준이나 품질 등이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실질적인 활동 없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업 이미지 포장에 활용하는 'ESG 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과 정보이용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선택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정보만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기업의 ESG 워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7개년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공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후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이 제3자 인증을 받았고, 온실가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기업사례분석을 통해 Scope3 배출량을 측정 가능함

1) 국내 ESG 보고서 인증의 가장 큰 문제는 ESG 인증을 강제하고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발간한 ESG 보고서의 내용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인증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ESG 정보 이용자들의 ESG 정보 감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다. (한국경제, 늘어나는 ESG보고서: 제3자 검증 '발등의 불', 2023.08.08)

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Scope1과 Scope2의 배출량의 합이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전체인 것처럼 보고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주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법적제재 사항과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공시 시 해외 사업장 배제 등 각기 다른 기준을 토대로 ESG data를 산출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시 Scope3 배출량까지 포함 및 온실가스 검증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cope3 배출량 측정 불가 시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기업이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3 배출량이 배제됨을 명확히 해야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 보고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받은 제재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ESG 활동과 관련하여 과태료, 법적 처분 등 제재 사항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개선 노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 대상인 사업장 범위, 보고서의 명칭 및 보고연도 등을 통일하는 작업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를 앞두고 ESG 활동을 부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먼저,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까지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수집하고, 국내 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보고서의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 입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들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II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인증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인증보고서 등의 공시 현황을 소개한다. IV장에서 관련 기업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ESG 가이드라인 로드맵 작성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제도 및 선행연구 소개

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근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 및 파리 협정의 이행 체제 하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규제가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ESG를 향한 관심은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도 CSR, 지속가능성 등의 이름으로 한 세대 이상 꾸준히 존재해왔다. 기업들의 ESG 활동 관련 공시의 경우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어왔다. 기업의 ESG 관련 정보의 자발적 공시는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까지는 자발적 공시 대상이며, 매년 약 130여 개의 기업에 의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200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Chung, 2021).

한편, 기업의 ESG 정보 공시의 수단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화는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의 공개지침(NFRD)'을 근거로 Sustainability Report(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미국은 2020년부터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ESG 공시 의무화를 진행 중이다. 중국 또한 2020년부터 홍콩증시 상장 기업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ESG 정보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의 ESG 활동과 이에 대한 공시 수준은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의 규제당국은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Kang & Jung, 2020).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 발간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일부 항목들은 3~5년치 추세를 기록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ESG 정보 의무공개 대상을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 하는 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21).

기업들의 ESG 활동 및 공시가 기업의 성과 또는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Jang & Kim, 2013; Son & Lee, 2019; Kang & Jung, 2020). 한편,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늘어나면

서 보고서 발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hoi et al.(2017)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현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공시에 의해 주장된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 성과 개선과 유의하게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들의 CSR 활동 공시를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Jung et al.(2019)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및 업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공시의 충실성과 적시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im et al.(2022)은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을 검토하고 편의성이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기관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ESG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ESG보고서 신뢰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제3자검증보고서

기업의 ESG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현재까지는 자발적 공시로, 공시의 신뢰성은 자율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CDSB),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왔다. 한편, 상당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들은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보고서가 각종 국제 권고안에 부합한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첨부해 왔다. 이러한 인증은 기업의 공시가 이러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제3자 검증서'라는 이름으로 공시된다.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비영리 기관인 GRI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향이지만, 최근에는 SASB와 같은 회계 공시 규제 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21). GRI는 기업의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시지표를 제시하는 반면 SASB는 투자자에 초점을 맞춰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GRI와 SASB는 성격상 상호보완적이며 최근 대기업들은 대부분 두 표준을 모두 채택하여 보고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검증기관의 검증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자 검증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제3자 검증 보고서'나 '검증 의견서'와 같은 명칭으로 공시되고 있다. 제3자 검증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규정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를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제3자 검증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Yook(2017)은 제3자검증 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환경효율과 환경투자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Jung et al.(2019)에서는 제3자검증기관에 의한 검증보고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표한 우수보고서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Choi et al.(2017)은 제3자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의 연도별 현황 및 인증기관 분포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이어 가장 최근에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제3자검증의 실태 파악 및 검증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제3자검증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국내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현황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활발해지는 2016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서 2022년까지 7개년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 및 DART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DB를 통해서 집계하거나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발간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발간 기업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2008년이 되어서야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Yook(2017)과 Cho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황을 간략히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에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적용 국가 확대, 법적 구속력 및 이행 수준의 강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6년부터 새로운 글로벌 표준과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 발간을 제도화하는 것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기간은 201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 설정하였으며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3.2 국내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본 연구에서 집계한 7개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들의 현황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보고서 발간 수(obs.)는 2022년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1년도부터 보고서 발간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받은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92.65%로 표본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21년도 이후로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자 검증의 경우 회계법인이 진행한 경우는 7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7.19%로 회계법인이 아닌 기관에게 검증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검증을 받는 표본의 경우 2016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49.2%로 전체 표본 중 거의 절반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함께 온실가스 검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계한 7개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들의 Scope3 배출량 공시 현황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Scope3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업들이 Scope3 배출량을 공시한 비율은 7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35.92%로 표본의

<Table 1> 기술통계 (보고연도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평균
obs.	68	73	78	87	98	130	187	721
제3자 검증(%)	92.65	95.89	91.03	90.80	88.78	92.31	95.19	92.65
제3자 검증-회계법인(%)	15.87	10.00	7.04	3.80	4.60	4.17	6.74	7.19
온실가스 검증(%)	39.71	39.73	38.46	42.53	41.84	43.85	49.20	43.41

<Table 2> Scope3 배출량 공시와 검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평균
obs.	68	73	78	87	98	130	187	721
Scope3 공시(%)	30.88	32.88	33.33	34.48	39.78	35.38	39.57	35.92
Scope3 검증(%)	17.65	19.18	17.95	18.39	16.33	17.69	19.25	18.17

〈Table 3〉 제3자 검증 인증기관

기관명	Freq.	Percent.
한국경영인증원	189	28.29%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119	17.81%
한국표준협회	57	8.53%
한국생산성본부	48	7.19%
한국품질재단	46	6.89%
로이드인증원	45	6.74%
BSI Group Korea	42	6.29%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6	2.40%
삼일회계법인	15	2.25%
삼정회계법인	10	1.50%
더씨에스알	9	1.35%
산업정책연구원	9	1.35%
한영회계법인	9	1.35%
안진회계법인	6	0.90%
지속가능경영원	6	0.90%
한국능률협회인증원	5	0.75%
신한회계법인	4	0.60%
㈜IMCSR	4	0.60%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션	4	0.60%
마크스폰	3	0.45%
퀀티파이드이에스지	3	0.45%
네트웍스 와이	2	0.30%
더와이파트너스	2	0.30%
엔스테인	2	0.30%
㈜iMSR	2	0.30%
한국전략경영학회	2	0.30%
KOSRI	1	0.15%
대신경제연구소	1	0.15%
서현회계법인	1	0.15%
신한대학교 ESG혁신단	1	0.15%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1	0.15%
에코나인	1	0.15%
위드회계법인	1	0.15%
지속가능경영연구소	1	0.15%
한국기업인증원	1	0.15%
총합계	668	100%

1/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해 Scope3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받은 기업의 평균은 18.17%로 Scope3 배출량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 검증을 담당한 인증기관에 대한 통계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위 2개 업체인 한국경영인증원과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가 약 4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²⁾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은 총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Choi et al.(2017)에서 보고한 바와 같

이 2015년 이전에는 대형회계법인이 10% 중반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 감소한 추세이다.³⁾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 인증기관에 대한 통계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검증기관의 경우 제3자 인증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 4개 업체인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경영인증원이 약 6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 제3자인증과는 달리 온실가스 검증은 거의 담당하지 않는 것을 확

<Table 4> 온실가스 검증 인증기관

기관명	Freq.	Percent.
한국표준협회	70	22.36%
한국품질재단	58	18.53%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44	14.06%
한국경영인증원	42	13.42%
로이드인증원	31	9.90%
BSI Group Korea	23	7.35%
한국생산성본부	19	6.07%
한국품질보증원	7	2.24%
삼일회계법인	6	1.92%
이큐에이(주)	4	1.28%
한국선급	3	0.96%
대일이엔씨기술(주)	2	0.64%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0.32%
지속가능인증원	1	0.32%
한국가스안전공사	1	0.32%
한국능률협회인증원	1	0.32%
총합계	313	100%

2) 한국경영인증원의 경우 2017년 사명을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변경하였다.

3) 추가로 제3자 검증을 담당한 인증기관의 유형에 따른 기업들의 Scope3 공시 행태를 살펴 보았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은 Scope3 배출량 공시 비율이 34%인 반면에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의 Scope3 배출량 공시 비율은 38%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인증기관의 유형은 기업들의 Scope3 배출량 공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일 회계법인만이 전체 표본의 1.92%에 대해 온실가스 검증을 담당하였다.

IV. 기업 사례 분석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7개년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공시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들의 대표적인 공시 미비 사례들을 보고한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기업 사례는 여러 기업 중 기업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가지는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산업군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공시 미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며, Scope3 탄소배출량 관련 선택적 공시, 제재 사항 누락 및 축소, 모호한 공시기준이다.

4.1 공시 미비 유형1: 탄소배출량(Scope3) 관련 선택적 공시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Scope1), 전기, 열 또는 증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Scope2), 마지막으로 제품 사용 및 폐기물 배출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탄소(Scope3)로 분류된다(Bolton & Kacperczyk, 2021; Choi & Noh, 2016; Sim & Chun, 2023). 과거에는 탄소배출규제가 Scope1 중심이었지만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도 제품의 사용, 재활용 및 폐기 등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로 점차 확장되면서 협력업체와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3가 탄소배출량 공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⁵⁾ 한편,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기업의 경우 Scope3로 분류되는 간접배출량을 선택적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생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래 <Table 5>는 2021년의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대한 부분이며, Scope1과 Scope2 배출량뿐만 아니라 Scope3 배출량에 대한 3가지 항목(협력회사, 물류, 임직원 출장)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2020년도 Scope3 배출량은 총 14,726 천톤 CO2e로, Scope1과 Scope2의 배출량의 합인 14,806 천톤CO2e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뿐 아니라, 협력회사, 물류 및 임직원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 배출량도 삼성전자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다음 해인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Scope3로 분류되는 간접배출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Scope3 배출량 항목은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는 다르게 보고서에서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략된 이유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기업의 탄소 직접배출량인 '스코프1', 에너지 사용에 따른 '스코프2'를 넘어 기업 활동 전체의 탄소발생량(스코프3)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스코프3 의무공시 임박... 공급망 조달정 탄소데이터 측정하려면, 조선미디어, 2023.05.24)

〈Table 5〉 2021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온실가스 관리 중 일부

온실가스관리	2018	2019	2020	단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15,151	13,800	14,806	천톤CO ₂ e
직접배출량(Scope1)	4,855	5,067	5,726	천톤CO ₂ e
간접배출량(Scope2)	10,296	8,733	9,079	천톤CO ₂ e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3.6	3.1	3.2	톤CO ₂ e/억원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7,952	8,278	8,030	천톤CO ₂ e
협력회사	7,952	8,278	8,030	천톤CO ₂ e
물류	7,846	8,223	6,682	천톤CO ₂ e
임직원출장	110	106	14	천톤CO ₂ e

〈Table 6〉 2022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온실가스 관리 중 일부

온실가스관리	2019	2020	2021	단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13,800	14,806	17,400	천톤CO ₂ e
직접배출량(Scope1)	5,067	5,726	7,604	천톤CO ₂ e
간접배출량(Scope2)	8,733	9,079	9,796	천톤CO ₂ e

Scope3 배출량 수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에 불리한 정보로 보아 누락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의 탄소배출량은 17,400 천톤CO₂e로,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사실상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Scope3 배출량도 Scope1과 Scope2와 마찬가지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자의적, 선택적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ESG 보고서에서는 전반

적으로 Scope 3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음에도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다. 다음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SG 자료 내 환경성과 중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료에서는 Scope3 배출량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고 방식은 CJ 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접하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Scope1 배출량과 Scope2 배출량의 합이 기업 전체의 배출량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21 CJ 대한통운의 ESG 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Scope3 배출량은 약 31.2만 tCO₂eq로, Scope1과 Scope2의 배출량의 합인 22.8만 tCO₂eq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처럼 일부 기업들은 Scope1과 Scope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Scope3 탄소배출량에 대한

5) CJ대한통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재료 조달, 수송 및 물류, 제품 사용 및 폐기 등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Scope3를 최초로 측정하였으며, Scope3 범위 중 구매물품과 서비스, 자본재, 운송 및 배송, 폐기물 발생 등 56가지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Scope3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Table 7〉 2021 CJ대한통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일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온실가스총배출량	tCO ₂ eq	214,808	227,176	228,271	
Scope1배출량	tCO ₂ eq	122,306	123,199	118,548	
Scope2배출량	tCO ₂ eq	92,502	103,977	109,742	
원단위배출량	tCO ₂ eq/억원	2.1	2.0	2.0	국내매출액 기준
온실가스절감실적	tCO ₂ eq	-27,365	-46,239	-15,158	할당량대비절감실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후반부에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 아래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CJ대한통운은 KMR(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해 2021년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 검증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검증범위가 Scope3를 제외한 Scope1과 Scope2 배출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계량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앞으로는 검증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를 하거나 Scope3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온실가스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2 공시 미비 유형2: 제재 사항 누락 및 축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 인권 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과 같은 문제들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한 대응 및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현재 법적인 제재까지 받은 부정적인 사건을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을 축소하여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SG 공시 미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9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벌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관련

〈Table 8〉 2021 CJ대한통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성명서 중 일부

검증개요	씨제이대한통운(주)은(는) 교토 프로토콜의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매년 ISO 14064 등 검증표준에 근거한 MRV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MR은 씨제이대한통운(주)의 2021년도 검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증범위	- 조직경계 및 운영경계 : 해당조직 운영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배출시설 - 검증대상 사업장 : 씨제이대한통운(주) - 검증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배출원 : 직접배출원(Scope1), 간접배출원(Scope2) - 보증수준 : 합리적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 총 배출량의 $\pm 5.0\%$)

된 전현직 임직원 26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총괄티에프(TF) 조직을 결성하여 조직 차원에서 노조 와해를 위한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있다.⁶⁾ 그러나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2022년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⁷⁾ 이는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다(PSPD Issue Report, 2023).

아래 <Table 9>는 2022년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며,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사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규정을 정비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의 법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9> 2022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준감위는 관계사 준법감시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 관련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권고함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 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소통 강화 권고에 따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과 주요 경영진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	---

- 6)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7월 결성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티에프는 교섭대응·상황대응·언론대응 등 3개 분야 팀을 산하에 두고 임원과 부장급이 각각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이 노조 설립 초기부터 결성 이후까지 단계를 나눠 대응책을 적시한 일반적 ‘전략서’라면, 티에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직인 셈이다. 티에프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마스터플랜에 제시됐던 ‘표적감사’ ‘단체교섭 지연’ ‘반대시위 기획’ 등을 이행하고 점검했다. 특히 이들 활동을 삼성전자 본사의 별도 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은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직접관여 여부를 밝힐 고리가 될 수 있다.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처벌을, 한겨레, 2018.04.11.)
- 7) 대법원이 2021년 2월 4일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등 위반 혐의에 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8월 10일 선고한 당사 A부사장(근속연수 29년) 징역 1년 4개월, B前부사장 징역 1년 2개월(2년간 집행유예), C부사장(근속연수 34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유예), D前부사장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 E전무(근속연수 32년) 징역 1년, F전무(근속연수 24년) 징역 1년 2개월(2년간 집행유예), G상무(근속연수 27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유예), H상무(근속연수 18년)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고, 당사 및 당사의 전이사회 의장(근속연수 39년) 등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주) 및 임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등 위반과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위반금액 약 1,678백만원)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주) 벌금 50백만원(추징세액 약 97백만원), 삼성전자서비스(주) 前대표이사(근속연수 4년) 징역 1년 4개월, I전무(근속연수 11년) 징역 1년, J상무(근속연수 21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행동규범 등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예방 관련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다음으로 KCC는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을 비전으로 삼은 기업으로,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중심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친환경 페인트 등을 개발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초 KCC 세종공장 직원들의 공모로 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수집여 차례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검찰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2022년 1월에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⁸⁾ 그러나 보고기간이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021-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 <Table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인 2021-2022년도에 중요한 유해물질의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KCC의 사례를 통해 기업은 보고연도에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LG전자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및 기타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통계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2011년부터 김치냉장고에 포함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FDA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김치통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는 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LG전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음 <Table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LG전자는 법률 및 규제 위반을 한 건에 대해 벌금과 제재 횟수를 공시하고 있다. 한편, 이는 규모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대상이며 규제 위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한 공시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처

<Table 10> 2021-2022 KC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사업장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중 일부

화학물질 관리	KCC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시설에 설치한 감지기 및 차단장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의 보관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유출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평균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oxics Release Inventory, TRI)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고 기간 동안 중요한 유해물질의 유출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8) 검찰은 KCC 직원인 A씨와 B씨를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월 두 사람 대해 각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CC 세종공장에서 (A씨와 B씨가)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매우 높아 관할 행정청도 배출 여부와 배출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만약의 위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인사이트코리아, KCC,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은폐...정몽진 회장 'ESG 경영'은 공염불? 2022.02.15.)

〈Table 11〉 2029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내 기타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중 일부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요 벌금의 액수	원	30,000,000	0	19,350,848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개	0	0	0

* 규모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대상 집계 (DJSI 기준)

* 연도별 평균 환율 기준 환산

럼 LG전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법적 제재에 대해 내용을 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 관련 공시 기준 및 형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4.3 공시 미비 유형3: 모호한 공시 기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자료를 제공할 때, 공시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각기 다른 기준을 토대로 작성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 대해서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기업도 있으나,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Table 12〉는 포스코가 '기업시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일부이다. 포스코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나 물 사용에 대해서 국내 사업장(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의 경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ESG 자료는 국내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추후 기업의 ESG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모두 포함시켜 공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포스코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공유용수 사용 등을 공시할 때, 국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단의 작은 각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더 나은 기업 이미지를 위해 ESG 자료에 대해서 자의적인 공시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보고한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에는 지속경영 보고서 내 ESG 자료 작성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업무 환경 및 구성원 다양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관리자 비중을 공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다음 〈Table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매년 여성 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한편, 〈Table 14〉의 2019 지속가능보고서를 확인해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해외 임직원 수를 포함하여 재산정되면서 2018년에 보고했던 여성 관리자 비율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 다음 〈Table 15〉와 같이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를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의 범위

〈Table 12〉 2021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중 일부

코드	카테고리	단위	측정 지표	포스코 대응
온실가스				
EM-IS-110a.1		톤(t), 백분율(%)	(1) 글로벌 총 Scope 1 배출량, (2) Scope 1 배출량 중 배출 제한 규제 적용 대상 비율	(1) 77,101,095 (2) 100% 포스코의 Scope 1 배출량 범위는 포스코의 국내 사업장(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을 통해 Scope 1 배출량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 12월 '포스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Scope 1&2 기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20%, 2040년 50% 감축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감축경로에 따른 저탄소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원고에 상세 기술되어 있습니다.
EM-IS-110a.2			Scope 1 배출, 배출 감소 목표, 목표 대비 성과 분석의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전략과 계획에 대한 논의	
물				
EM-IS-140a.1	정량지표	천 m ³ , 백분율(%)	총 취수량 물 재활용 비율	135,800 35.2%
EM-IS-140a.1	정량지표	천 m ³ , 백분율(%)	물 스트레스 지수 '높음(40-80%)' 지역에서의 용수 사용량 물 스트레스 지수 '매우 높음(>80%)' 지역에서의 용수 사용량	0 포스코의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 지역 은 모두 물 스트레스 지수가 40% 이하의 지역으로 해당 용수 사용량은 없습니다. 0 포스코 국내 사업장이 속한 대한민국 은 물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 없어, 해당 용수 사용량은 없습니다.

〈Table 13〉 2018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여성 임직원 및 관리자 현황

구분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여성 임직원 비율(%)	64.3	63.8	64.2	69.7	68.5	68.4
여성 관리자 비율(%)	24.7	27.1	29.2	26.5	29.1	31.0

〈Table 14〉 2019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여성 임직원 및 관리자 현황

구분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여성 임직원 비율(%)	71.0	72.0	72.0	74.7	75.2	74.9
여성 관리자 비율(%)	30.4	33.4	33.6	32.8	35.6	35.5

〈Table 15〉 2021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 중 지표 및 데이터 - 직급별/직군별 여성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비고
국내관리자 수	명	14,736	15,534	16,779	관리자: 과장급 이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임원 포함 (자문역 제외)
국내 여성 관리자 수	명	558	710	1,042	
해외 관리자 수	명	3,491	7,013	7,303	
해외 여성 관리자 수	명	552	822	947	
총 관리자 수	명	18,227	22,547	24,082	
총 여성 관리자 수	명	1,110	1,532	1,989	
총 여성 관리자 비율	%	6.1%	6.8%	8.3%	총 여성 관리자 수 / 총 관리자 수
여성 하급 관리자 수	명		1,084	1,504	하급관리자: G2레벨로 정의 (*하급관리자 데이터는 2020년부터 취합/보고함)
여성 하급 관리자 비율	%	-	6.6%	8.3%	
여성 최고 관리자 수	명	-	37	42	
여성 최고 관리자 비율	%	-	5.4%	5.8%	

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기업들마다 매우 상이하며, 관리자 중에서도 과장급, 연구직 및 임원은 모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기업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보고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관리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자 중에서도 책임 직급의 관리자와 임원 직급을 구분해서 공시하고 해외 임직원을 별도로 표기하는 등의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4.4 해외 기업 사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한 미국 기업 중 Scope3 배출량을 공시하는 비율은 약 56%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 기업들의 평균인 35%를 크게 상회하였다. 국가의 규

제 및 투자자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Scope3 공시 비율은 계속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Scope3 배출량 공시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Scope3 배출량 보고가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과의 비교를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Nike와 Apple이 Sustainability Report에서 Scope3 배출량을 공시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Nike의 경우 2012년부터 Scope3 배출량을 Sustainability Report에 공시하기 시작하였고, 〈Table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파트 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공시한다. 국내 기업들과는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Scope3 공시에 할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cope3 공시에 대한 제3자인증기관 검증도 2012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Apple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Scope3 배출량을

〈Table 16〉 2021 Nike Sustainability Report - Scope3 배출량 공시 중 일부

FY21 Emissions summary(Metric Tons CO2e)	Emissions	Emissions(%)
Scope 1	42,720	0.4
Scope 2 (market-based emissions)	76,420	0.7
Scope 3	10,823,562	98.9
Total	10,942,702	

Scope 3 Emissions: Manufacturing & Logistics (Metric Tons CO2e)	FY20	FY21
Tier 1 - Footwear Manufacturing	1,388,826	1,411,754
Tier 1 - Apparel Manufacturing	89,865	72,601
Tier 2 - Footwear Textile Dyeing and Finishing	207,713	193,463
Tier 2 - Apparel Textile Dyeing and Finishing	785,487	727,076
Logistics - Inbound Transportation	1,013,581	275,199
Logistics - Outbound Transportation	164,684	184,719

〈Table 17〉 2022 Apple Sustainability Report - Scope3 배출량 공시 중 일부

Corporate emissions (metric tons co2e)	2021	2020
Scope 1 (gross emissions)	55,200	47,430
Natural gas, diesel, propane	40,070	39,340
Fleet vehicles	12,090	4,270
Process emissions	3,040	3,830
Scope 2 (market-based)	2,780	0
Electricity	0	0
Steam, heating, and cooling	2,780	-
Scope 3 (gross emissions)	23,130,000	22,550,000
Business travel	22,850	153,000
Employee commute	85,570	134,000
Corporate carbon offsets	-167,000	-70,000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Table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cope3 배출량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공시할 뿐만 아니라 Corporate carbon offsets 감소량까지 공시하고 있다. Nike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Apple도 제3자인증기관으로부터 Scope3 공시 검증을 받고 있다.

Nike와 Apple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Scope3 배출량 공시뿐만 아니라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소시킬지, Net-Zero 특히, Scope3를 어떠한 로드맵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계획들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제3자인증보고서 공시 현황 파악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미비 사례들을 보고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7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들의 동향을 분석했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보고서 발간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검증받았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받는 기업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의적 보고, ESG 활동 관련 법적 제재 사항 누락, ESG 자료 산출 시 자의적 공시기준 적용 등의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Table 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Scope3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시 Scope3를 포함한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Scope3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보고 시, Scope3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Scope3 배출량의 중요도와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검증의 경우에도 Scope1과 Scope2 뿐만 아니라 Scope3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Scope3 배출량에 대한 측정의 한계 등으로 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은 이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Scope1과 Scope2의 배출량의 합이 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과소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받은 제재 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업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공시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보고기간 동안의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처일 것이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보고연도에 발생한 법적인 제재 사항에 대해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의 횡령 또는 배임이 발생할 경우, 횡령·배임 혐의발생공시 또는 횡령·배임 사실확인공시를 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고서로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주요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시 법적인 제재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건 발생 시, '관련 제재 현황' 항목 아래에 사업보고서에 서술한 내용보다도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처분이 있었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있었을 경우, 기업들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3자인증기관의 경우 검증의견서 작성 시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등을 판단할 때, ESG 활동 관련 법적인

제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업사례를 통해 기업들의 공시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 대해서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기업도 있으나, 해외 사업장을 배제하고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ESG 자료에 대한 작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정식 명칭이나 보고연도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 통합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ESG report, Sustainability Report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발간되고 있다. 또한, 보고연도의 경우에도 21년 한 해 동안 (21.01.01~21.12.31)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해 공시하는 경우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고 발간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보고서가 발간하는 연도를 반영하여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고 공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서 명칭이나 연도에 통일성이 없다면 정보이용

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 시, 정보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보고서의 명칭과 연도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3자 인증 없이 형식상의 홍보전략으로만 활용한다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이후에도 소위 ESG 부풀리기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ESG 보고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 의무화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보고서 발간 및 제3자 인증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위에 제시한 공시 미비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22년 자료까지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전수조사하고 보고서 발간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 공헌점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한 공시 미비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able 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정책적 제언

유형	현황	공시 가이드라인
Scope3 탄소배출량	- Scope3 배출량 공시 생략	- Scope3 배출량 공시 및 검증 의무화 - 공시 불가 시 Scope3 배출량은 배제됨을 명시
관련 제재 현황	- ESG 활동과 관련 제재 사항 공시 배제 또는 축소 (과태료 등 법적 처분)	- '관련 제재 현황' 공시 의무화 - 상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서술
공시기준 및 기타사항	- 국내 사업장에 국한하여 온실가스배출량 등 공시 - 여성 관리자의 기준 및 정의 모호 - 보고서 명칭 및 연도 통일성 부재	- 사업장(국내/해외) 등 공시대상 기준 정립 - '관리자' 등 보고서 내 활용하는 용어에 대한 기준 및 정의 명시 - 보고서 명칭 및 발간연도 표준화

참고문헌

- Bolton, P., and M. Kacperczyk(2021), "Do investors care about carbon risk?,"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2(2), pp.517-549.
- Choi, J. S., and J. H. Noh(2016), "Usefulness of Voluntarily Disclosed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41(6), pp.105-157.
- Choi, J. H., D. H. Yang, H. S. and Ryu, L. Jin(2017), "Reliability of Non-financial Information: An Analysis of Sustainability Reporting," *Korean Management Review*, 46(4), pp. 1157-1200.
- Chung, S. Y.(2021),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on-Financial Reporting by Domestic Firms," *KCGS Report*, 11(1), pp.11-20.
- CJ Logistics(2022), "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1.01-2021.12)".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 Exchange(2021),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for Corporate Disclosure System (2021. 01. 14)". Retrieved from the website: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606.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Accounting Institute(2021), "Press Release: Korean Translation of SASB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1. 11. 10.)". Retrieved from the website: <https://www.fsc.go.kr/no010101/76848>.
- Jang, S. W., and Y. H. Kim(2013), "Corporate ESG and Long-Run Financial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0(1), pp.131-152.
- Jung, D. J., P. Kang, S. Park, and S. Ma(2019), "An Analysis on the Trend of New Corporate Reporting in South Korea," *Korean Accounting Journal*, 28(1), pp.239-258.
- Kang, W., M. Jung(2020), "Effect of ESG Activities and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9(5), pp.681-707.
- KCC(2022), "2021/22 Sustainability Report(2021. 01-2021.12)".
- Kim, T. S. Shin, and C. Bae(2022), "The Current State of Sustainability Reports Disclosure: Through the Public Institution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40(2), pp.59-82.
- Korean Standards Association(2021), "Status of Sustainability Report," <https://www.ksa.or.kr/ksi/5011/subview.do>(retrieved December 12, 2021)
- Park, Y. S. L. Han(2021), "The Effect of ESG Activities on Corporate Image, Perceived Price Fairness, and Consumer Responses," *Korean Management Review*, 50(3), pp.643-664.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Issue Report, "Drawbacks and Implications of Samsung Electronics · Samsung C&T · Samsung SDI ESG Report," PSDP.
- POSCO(2022), "2021 Corporate Citizenship Report (2021.01-2021.12)".
- Samsung Electronics(2022), "Annual Report".
- Samsung Electronics(2021), "2021 Sustainability Report(2020.01-2020.12)".
- Samsung Electronics(2022), "2022 Sustainability Report(2021.01-2021.12)".
- Sim, J. Y. and H. Chun(2023), "The Imprisonment and Clemency Experience of Chaebol Heads and Carbon Emission: Evidence from Korean Business Groups," *Korean Management Review*, 52(2), pp.487-512.

- Son, S. H., and J. H. Lee(2019), "Price Impact of ESG Scores: Evidence from Korean Retail Firms," *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7), pp.55-63.
- Yook. K.(2017), "Determinan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uranc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6(1), pp.157-183.
- Yoon, B., J. H. Lee, and R. Byun(2018), "Does ESG Performance Enhance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0 (10), pp.3635-3652.

-
- The author Seung Jae Lee is currently serving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BRE of Kore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ccounting at Dongguk University and earned an MBA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in the United States. He obtained his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ing in Accounting, from Korea University. After obtaining his doctorate, he has been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IBRE) of Kore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and teaches accounting at Korea University.
 - The author Jae Yeon Sim is currently serving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BRE of Kore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where she also completed her mast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arned a Ph.D. in Accounting. After obtaining her doctorate, she has been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IBRE) of Kore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and is also teaching accounting at various other universities.